

# 國產電算組織의 活用을 위한 規定案

- ◇… 経済長官會議에서 科技處는 電子計算組織導入 利用에 관…◇
- ◇…한 規定案을 의결했다. 이 규정은 電算組織導入에 관한…◇
- ◇…기준 설정과'아울러 中型 이상(공공기관은 小型이상)의 전…◇
- ◇…산조직을 導入 할때는 電子計算組織委員會에 審議를 거쳐…◇
- ◇…科技處長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. 이는 앞으로 國產 電算…◇
- ◇…組織의 活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, 業界를 위해 全文을 …◇
- ◇…소개한다. …◇

## 電子計算組織導入利用에 관한 규정안

제 1 조(目的) 이 令은 科學技術振興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電子計算 조직(이하 「電算 조직」이라 한다)의 導入利用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必要한 사항을 규정함을 目的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令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「電算組織」이라 함은 입력·출력·연산·제어 및 기억의 機能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情報資料를 수학적·논리적으로 처리하는 機械組織(하드웨어)과 同機械組織의 効率的 動作 및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합인 이용기술조직(software)을 말한다.

2. 「電算組織関聯機器」라 함은 전산조직에 직접 관련되는 入出力裝置, 보조기억장치, 단말장치와 보조기기 등을 말한다.

3. 「電算組織의 導入」이라 함은 전산조직 공급자로부터 電算組織 및 관련기기를 구입, 임차, (施設대여) 산업 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를 포함한다) 수증하여 設置하는 다음 각항목의 경우를 말한다.

가. 電算組織 1대이상을 기존 전산조직에 부가

하여 設置하는 추가도입

- 가. 電算組織 또는 관련기기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신규도입
- 다. 기존 電算組織을 다른 전산조직으로 바꾸어 設置하는 대체도입
- 라. 기존 電算組織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기 억장치 또는 관련기기를 設置하는 증설도입.
- 4. 「공공기관」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  - 가. 国家機關 및 지방자치단체
  - 나. 政府投資機關管理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
  - 다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資本金, 기금 또는 경비의 50% 이상을 출자·출연·보조하는 機關 및 团体
  - 라. 特別법의 규정에 의하여 設立된 特殊法人

제 3 조(電算組織의 분류) 電算組織은 초대형, 대형, 중형, 소형, 초소형으로 구분하며 구분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 4 조(電算組織導入 계획승인) ① 중형이상(공공기관은 소형이상)의 電算組織을 도입하고자

하는 자는 科學技術處長官의 도입계획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② 科學技術處長官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導入計劃承認에 앞서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電子計算組織委員會 심의를 거쳐야 하며 電算組織의 機械組織 및 開發 기기의 국산대체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미리 商工部長官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전산조직 도입계획 검토기준) ① 과학기술처장관이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조직 도입계획 승인을 함께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전산조직을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 6 호 및 제 7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만 검토한다.

1. 필요성 및 경제성
2. 사전준비 및 요원화보 여부
3. 기존 전산조직과의 공동활용 가능여부
4. 기종설정의 적정성
5. 국산대체 가능 여부
6. 정비보수체계 및 계약내용의 합리성
7. 표준화방침에의 부합 여부

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산조직을 도입하는 경우, 제 1 항 제 1 호내지 제 3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의 설치협의로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6 조 (표준화) 과학기술처장관은 정보자료의 호환성 확보, 정보유통망의 구축 등 전산조직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산조직의 표준화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국산 전산조직의 활용) 과학기술처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산전산조직 및 관련기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동요청을 받은 기관은 가격과 성능면에서 현저히 불리하지 않는 한 국산 전산조직 및 관련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전산조직 공급자의 신고 등) ① 외국에서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(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는 제외한다)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산조직의 활용도 제고와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전산조직 공급자에 대하여 필

요한 기술인력 및 부품 등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9 조 (전자계산조직 위원회) ① 전산조직의 도입 및 이용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전자계산조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전산조직의 이용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2. 전산조직의 공동활용체계구축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전산조직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
4. 전산조직 도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
5.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2 항 제 4 호의 심의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.

④ 소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 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0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과학기술처 차관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, 내무부, 재무부, 문교부, 상공부, 체신부 총무처 및 과학기술처의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명하는 자와 전산조직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 (위원장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.
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2조 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와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13조 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

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4조 (안전대책)**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산조직의 이용보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기준을 수립하고, 이를 전산조직 사용자 및 공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.

**제15조 (실태조사)** 과학기술처장관은 전산조직의 관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산조직 사용자 및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1. 전산조직 이용실태
2. 전산조직 요원현황
3. 전산업무 개발현황
4. 정비보수 지원체제
5. 전산조직표준화 실시현황
6. 국산기기 활용실태
7. 기타 필요한 사항

**제16조 (업무협조)** 과학기술처장관과 상공부장관은 전산조직의 효율적인 도입관리 및 국산화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.

1. 전산조직 국산화 계획의 수립시행
2. 전산조직 공급자 및 국산업체현황
3. 전산조직 수출입관리
4. 전산조직 이용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5. 기타 정보산업육성에 관한 사항

**제17조 (시행규칙)**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(법령의 폐지) 이 영의 시행일로부터 전산계산조직개발조정위원회 규정(대통령령 제8601호)은 이를 폐지한다.

#### 〈별표〉 電子計算組織分類基準

(单位 : US 弗)

區 分	超大型	大 型	中 型	小 型	超 小型
販賣価格(千弗)	1,500이상	1,500~ 700	700~ 300	300~ 100	100미만
月 貨 借 料	35,000이상	35,000~15,000	15,000~ 7,000	7,000~ 2,000	2,000미만

註 : 1. 販賣価格은 FOB価格을 기준으로 한다.

: 2. 月 貨 借 料(整備料포함)는 1년계약시 貨借料를 기준으로 한다.